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91
----------	------

2016년 9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5. 박마루 의원 발의
【찬성자 10명】
2. 회부일자 : 2016. 5. 27.
3.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9월 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마루 의원)

1.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현행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추가(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개정안의 취지 및 개요

-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는 관련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현행 해당 조례에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서울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필요성 및 주요사항 검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¹⁾」(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과 같은 법 시행령²⁾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매목표비율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상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공공기관 장애 대한 권고적·훈시적 규정에 해당되어, 상위법의 목적과 규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노력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이 조례에 권고적·훈시적 조항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하겠으며, 규범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법정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법령 간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입법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마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1
----------	------

발의년월일 : 2016년 5월 25일

발 의 자 : 박마루 의원(1명)

찬 성 자 : 우미경, 김현기, 최영수,
성백진, 김선갑, 김제리,
신건택, 이정훈, 강감창,
김광수(도봉) 의원(10명)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현행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추가(안 제6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p>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추가 비용 발생의 요건이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박 마 루